

다시 뛰는 마포! 함께하는 미래

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

[2026년 2분기]

마 포 구

목 차

[일 반 회 계]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1. 손해배상[기] 소송 판결에 따른 소송비용 지급 (도로개선과) | 2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
일 반 회 계

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

제 출 일 : 2026. 7.

부 서 명 : 도로개선과

1. 근거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」

2. 예비비 지출 내역

- 지 출 명 : 2025나206713 손해배상(기) 소송 판결에 따른 소송비용 지급

- 소송개요

- 사 건 명: 2025나206713 손해배상(기) [1심: 2023가단234587 → (병합)2024가합32389]
- 당 사 자: (원고) 박재형 / (피고) 서울특별시 마포구
- 사고요약: 피고2 활림건설이 비관리청 도로공사 허가 신청에 따라 양화로18안길 21에 대한 도로 재포장 공사를 대부분 마친 상태에서, 2021. 4. 4. 16:00경 해당 경사로에서 원고가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내려오던 중 전도되며 넘어지는 사고로 외상성 경막하 출혈, 사지마비, 뇌내출혈의 상해를 입음

- 판결요지: **항소기각 및 1심판결 인용** (2025. 11. 27. 항소심 확정)(배상비율 20%, 원고승소율 40%)

- [마포구] 관리상의 하자 인정 → 원금(413,480,576원) 및 지연손해금(125,754,736원)

※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합친 소송판결금 539,235,310원 2026. 1. 30. 지급 완료

- [㈜활림건설] 관리 소홀 행위는 인정되나, 단기 소멸시효(3년) 완성으로 배상책임 제외(1심 결과)

주1) 사건 발생 2021. 4. 4. / 원고의 (주)활림건설 상대 소 제기 2024. 7. 26.

- 패소원인: 도로 구조적 결함(맨홀 단차) 및 관리 소홀 책임 일부 인정

- 예비비 지출 사유

- 원심판결(' 25. 11. 27.)과 소송 비용액 확정 송달(' 26. 3. 4.)에 대한 별도의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실정으로, 추후 (주)활림건설에 대한

구상금의 자진 납부 협의와 가압류 및 구상금 청구 소송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구상금액을 조속히 확정할 필요가 있어, 소송 비용액에 대하여 신속히 예비비를 배정받아 집행함

-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요지

- 사건번호: 2025카합6436 소송비용액확정 결정
- 송 달 일: 2026. 3. 4.(화)
- 결정요지: 서울고등법원 2025나206713 손해배상(기)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(피고: 마포구)이 신청인(원고: 박재형)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금20,771,749원임을 확정한다

○ 예비비 사용 세부명세서

(단위: 천원)

예 산 과 목				지출 결정액	지출액	지출 잔액	처리일자	
정책	단위	세부	통계목				지출 결정일자	지출 일자
도시기반 시설 확충	도로 개설사업	소송관련 토지매입 및 배상등	305-01 배상금등	20,772	20,772	-	'26.4.27.	'26.4.30.

○ 예비비 지출 세부내역

심급	비목	비용액 (원)	비고
1심	변호사 보수	16,095,347	$13,400,000 + (1,039,069,428 - 500,000,000) \times 0.005$ (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)
	인지대	3,772,500	$(1,039,069,428 \times 0.0035 + 555,000) \times 0.9$ (전자)
	송달료	23,613	$47,226$ (환급액 30,774 제외) $\times 1/2$ (피고들 수로 균분)
	감정료	700,000	$1,400,000 \times 1/2$ (피고들 수로 균분)
소계		8,236,584	$20,591,460 \times 40\%$ (피신청인 소송비용부담비율)
2심	변호사 보수	12,534,805	$10,400,000 + (413,480,576 - 200,000,000) \times 0.01$ (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)
	소계	12,534,805	
본안비용소계		20,771,389	1심 8,236,584 + 2심 12,534,805
소송비용 확정신청	인지대	900	
	송달료	42	기발생 5 + 모바일단문메시지 37 (잔액은 확정 후 등록된 환급계좌로 자동 환급됨)
신청비용소계		360	$942 \times 40\%$ (피신청인 소송비용부담비율)
합계		20,771,749	본안비용 20,771,389 + 신청비용 360